

現行 食品衛生法の 構成內容

— 運用과 解說 —

안 정 인 / 보사부 위생정책과

I. 序 說

食品衛生行政이란 식품으로 인한 衛生上 危害要因을 防止하기 위하여 國家가 實施하는 法的, 制度的 모든 活動이라 할 수 있으며 食品衛生法은 그 目的을 “食品으로 인한 衛生上의 危害를 防止하고 食品營養의 質的向上을 圖謀함으로써 國民保健의 增進에 이바지함”에 두고 있다.

여기서 “食品으로 因한”이란 食品·添加物과 같은 소위 食品으로 起因하는 것 이외에 飲食이라는 行爲自體에 直接·間接으로 影響을 끼치는 食品 또는 기타의 器具 및 容器와 包裝 등에 不必要한 異物質의 混入, 病原要因物質의 含有 또는 病原菌의 汚染 등에 의하여 國民保健에 障害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原因을 除去하고 安全性을 確保하기 위한 手段이나 技術은 食品衛生法上의 가장 基本的 規制對象이라 할 수 있다.

“食品營業의 質的向上의 圖謀”는 더 나아가 食品의 營養上 品質保障 및 品質向上

을 통한 國民健康의 增進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規制對象임을 意味한다고 하겠다.

食品의 安全性·健全性·完全性を 確保하기 위한 活動은 原料段階부터 製造, 加工 및 流通, 保健段階를 거쳐 최종적으로 消費段階에 이르는 모든 過程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食品衛生法은 다음과 같은 制度를 導入하고 있다.

- 非衛生的 食品 등의 排除
- 食品·添加物 등의 基準과 規格
- 營業 및 品目製造 許可制度
- 檢査制度
- 健康診斷 및 衛生教育
- 食品衛生管理人
- 食品衛生團體의 活動
- 行政規制와 行政罰
- 기타 支援 및 情報提供 等

II. 食品衛生法の 構成內容 解說

食品衛生法은 13章 80條로 構成되어 있으며 그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總則(第1章)

이 章에서는 法의 目的(第1條) 用語의 定義(第2條)와 食品등의 取扱(第3條)에 關하여 規定하고 있다.

2. 食品 및 添加物(第2章)

食品이라 함은 醫藥으로 攝取하는 것을 除外하고 모든 飲食物을 말하며 添加物이라 함은 食品의 製造·加工 또는 保存함에 있어 食品에 添加·混合·浸潤·其他의 方法으로 使用되는 物質을 말한다.

가. 非衛生的 食品 等の 排除(法第4條 내지 第6條)

다음에 該當하는 食品 또는 添加物을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채취 製造·輸入·加工·使用·調理·貯藏 또는 運搬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 (1)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人體의 健康을 害할 憂慮가 있는 것
- (2) 有毒·有害物質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念慮가 있는 것
다만, 人體의 健康을 害할 우려가 없다고 保健社會部長官(規則第2條)이 認定하는 것은 例外로 한다.
- (3) 病原微生物에 依하여 汚染되었거나 그 念慮가 있어 人體의 健康을 害할 우려가 있는 것
- (4) 不潔하거나 다른 物質의 混入 또는 添加 其他의 事由로 人體의 健康을 害할 우려가 있는 것
- (5) 法第22條第1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許可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申告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아니한

자가 製造·加工한 것

- (6) 法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目製造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品目製造 申告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製造한 것
- (7) 輸入이 금지된 것 또는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申告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申告하지 아니하고 輸入한 것
- (8) 飲用に 제공할 目的으로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 외의 地下水·地表水등의 물을 容器에 넣은 것
- (9) 保健社會部長官(規則第3條)이 定하는 疾病에 걸렸거나 그 念慮가 있는 動物 또는 그 疾病으로 인하여 죽은 動物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血液
- (10) 基準·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化學的 合成品 다만, 保健社會部長官이 食品衛生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人體의 健康을 害할 우려가 없다고 認定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食品 및 添加物の 基準과 規格(法第7條)

食品 및 添加物の 基準과 規格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1) 告示: 保健社會部長官은 國民保健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添加物の 製造·加工·使用·調理 및 保存의 方法에 관한 基準과 그 食品 또는 添加物の 成分에 관한 規格을 定하여 告示한다.
- (2) 自家基準과 規格: 告示된 以外에 基準과 規格이 定하여지지 아니한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添加物(化學的 合成品인 添加物을 除外한다)

로서 保健社會部長官은 國民保健上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 製造·加工業者로 하여금 製造·加工·使用·調理 및 保存의 方法에 관한 自家基準과 그 成分에 관한 自家規格을 提出하게 하여 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食品衛生檢査機關의 檢査를 거쳐 同基準 및 規格에 의하여 製造·加工할 수 있다.

- (3) 基準 및 規格例外: 輸出을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添加物의 基準과 規格은 告示 또는 自家基準과 規格에 關係없이 수입자가 要求하는 基準과 規格에 의하여 할 수 있다.

3. 器具와 容器·包裝(第3章)

“器具”라 함은 飲食器와 食品 또는 添加物의 채취·製造·加工·調理·貯藏·運搬·진열·수수 또는 섭취에 使用되는 것으로서 食品 또는 添加物에 直接 接觸되는 機械·器具 其他의 物件을 말한다. 다만, 農業 및 水産業에 있어서 食品의 採取에 使用되는 機械·器具 其他의 物件을 除外하며, “容器·包裝”이라 함은 食品 또는 添加物을 넣거나 싸는 物品으로서 食品 또는 添加物을 수수할 때 함께 引渡되는 物品을 말한다.

가. 有毒器具 등의 販賣·使用禁止(法第8條)

有毒·有害物質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人體의 健康을 害할 우려가 있는 器具 및 容器·包裝과 食品 또는 添加物에 接觸되어 이에 有害한 影響을 줌으로써 人體의 健康을 害할 우려가 있는 器具 및 容器·包裝을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輸入·貯藏·運搬 또는 陳列하거나 營業上

使用하지 못한다.

나. 器具와 容器·包裝의 基準과 規格(法第9條)

營業上 使用되는 器具와 容器·包裝의 製造方法에 관한 基準과 器具·容器·包裝 및 그 原資材에 관한 成分規格은 食品 및 添加物의 基準과 規格에 關連한 制度와 같이 이 規定에 의하여 現在까지 定하여진 器具·容器·包裝의 基準과 規格은 11種이 規定되어 있다.

4. 表示(第4章)

表示라 함은 食品, 添加物, 器具 또는 容器·包裝에 記載하는 文字·數字 또는 圖型을 말한다.

가. 表示基準(法第10條)

保健社會部長官이 國民保健上 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規定한 食品·添加物·器具 및 容器·包裝의 表示基準은 다음과 같다.

- (1) 表示對象: 食品·添加物·器具 및 容器·包裝
- (2) 表示事項: 製品名, 業所名, 製造年月日, 流通期限, 營業許可(申告)番號 및 品目製造許可番號, 重量, 容量 또는 個數, 原料名 및 含量등에 대하여 表示基準에 정하여져 있다.

나. 虛僞表示 등의 禁止(法第11條)

食品 등의 名稱·製造方法 및 品質에 關하여는 虛僞表示 또는 誇大廣告를 하지 못하고 包裝에 있어서는 誇大包裝을 하지 못하며, 食品·添加物의 表示에 있어서는 醫藥品과 混同할 우려가 있는 表示를 하거나 廣告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食品·添加物의

營養價 및 成分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虛偽表示·과대광고·과대포장의 範圍, 其他 必要的 事項은 規則 第6條에 規定되어 있다.

5. 食品添加物等の 公典(第5章)

保健社會部長官은 食品 添加物の 基準·規格·器具 및 容器·包裝의 基準規格과 食品 等に 대한 表示基準을 收錄한 食品·添加物 等の 公典을 作成·普及하여야 한다(法第12條).

6. 檢査(第6章)

가. 製品檢査(法 第13條)

(1) 의 의

製品檢査는 食品 等の 安全性 및 품질을 確認하기 위하여 行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製品의 出荷前에 國立保健院, 各市·道保健研究所, 民間團體인 食品衛生檢査機關에서 檢査하도록 하며 合格品에 限하여 市販하도록 하는 것이다.

(2) 製品檢査의 表示(法第14條)

製品檢査 合格의 表示는 製品檢査 合格證紙를 外部포장에 붙이거나 合格印을 찍도록 하여 國家가 消費者에게 衛生上 安全함을 保證하는 것이다.

(3) 不合格品 等の 販賣 等 禁止(法第15條)

製品檢査를 받아야 하는 食品 等은 製品檢査合格 表示를 하지 않으면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運搬 또는 진열하거나 其他 營業上 使用하지 못한다.

나. 輸入食品 等の 申告(法第16條)

食品 等の 輸入申告는 販賣 또는 營業上

使用하는 食品 等を 輸入하고자 하는 者에게 輸入申告의 義務를 加한 것이며 이는 國內에서 生産되는 食品 等に 대한 製造 및 流通管理가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에 反하여 外國에서 輸入되는 食品 等이 非衛生的이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食品衛生法上 必要的 檢査를 合理的으로 行하게 한 것이다 하겠으며 輸入食品의 申告檢査義務는 輸入港을 관할하는 各 檢疫所에서 行하고 있다.

다. 出入·檢査·收去 등(法第17條)

保健社會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부여되어 있는 出入, 臨檢, 收去 等の 權限에 關하여 첫째, 食品衛生法上 該當 行政廳이 營業을 하는 者 또는 其他 關係人에게 客觀적으로 必要的 報告를 要求하는 權限, 둘째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營業場所·事務所·倉庫·製造所·貯藏所 등에 대한 物件, 施設物, 장부, 서류의 出入, 檢査하는 權限, 셋째, 實驗에 必要로 하는 製品을 無償으로 收去하는 權限이다.

出入, 檢査는 行政官廳의 關係公務員(食品衛生監視員 등)이 그 所屬長의 命을 받아 行政法規의 執行을 確認하기 위하여 營業者 等の 營業所, 事務所 等の 現場에 또는 質問을 하기 위한 장부서류, 其他의 物件을 檢査하게 하기 위하여 實施하는 것으로서 實施時間의 制限은 없으나 通常적으로 營業時間에 實施하는 것이 原則이며 이를 기피, 거부, 방해하는 者는 處罰을 받게 된다. 그리고 出入, 檢査할 때에는 通常 그 신분을 證明하는 證標를 携帶하여 關係人에게 事전에 提示함을 原則으로 한다.

라. 食品衛生 檢事機關의 指定(法第18條)

(1)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製品檢査와 收去한 食品 等の 實驗에 關한 事務를 行하게 하기 위하여 ① 國立保健院, ② 國立檢疫所, ③ 市·道保健環境研究院과 水産物의 檢査를 위해, ④ 國立水産物檢査所를 檢査機關으로 指定하고 또한 민간단체인 食品衛生檢査機關을 指定하여 運營하도록 되어 있음.

- (2) 食品衛生檢査機關으로 指定받고자 하는 民間團體는 規則 規定에 의한 基準에 適合한 檢査施設과 人力을 갖추어 保健社會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마. 食品衛生監視員(法第20條)

食品衛生監視員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出入, 檢査, 收去 等 職務를 行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社會부와 市·道 또는 市·郡·區에 두도록 하고 있다. 食品衛生監視員의 資格, 任命, 職務範圍와 其他 必要한 事項은 令第5條 및 第6條에서 規定하고 있다.

- (1) 食品衛生監視員의 資格 및 任命(令第5條)
 (2) 食品衛生監視員의 職務(令第6條)

7. 營業(第7章)

食品衛生法上 營業이라 함은 食品 또는 添加物을 製造·加工·輸入·調理·貯藏·運搬 또는 販賣하거나 器具 또는 容器·包裝을 製造·輸入·運搬·販賣하는 業을 말한다. 다만, 農業 및 水産業에 屬하는 食品의 採取業은 除外한다. 食品衛生法 施行令第7條의 規定에 정해진 業種分類를 관리의 제도적 面에 의하여 分類한다면 食品製造加工業, 添加物製造業, 食品販賣業, 食品保存業, 容器·包裝類製造業, 食品接客, 調理

販賣業으로 區分할 수 있다.

가. 食品營業許可 等(法第22條 및 第23條)

- (1) 食品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個人 또는 法人)는 法第22條 및 同法施行令第7條에 定한 바에 의하여 許可官廳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營業場所 또는 施設(規則第23條)을 變更할 때에도 같다. 이때 許可官廳은 食品으로 인한 危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許可할 때 必要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 여기서의 條件은 法第23條의 規定에 있는 條件附營業所許可와 그 性格이 다르다. 前者는 主된 意思의 從된 意思表示이고 後者는 主된 意思表示를 一定한 期限을 定하여 許可時 法第22條의 施設을 갖추는 條件으로 許可하는 것이며, 條件附許可를 받은 者가 正當한 理由없이 一定한 期限內에 그 施設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2) 品目製造許可

食品 또는 添加物을 製造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品目마다 保健社會部長官, 市·道知事의 品目製造許可를 받거나 또는 品目製造申告를 하여야 하며 許可받은 사항 또는 申告한 事項을 變更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營業申告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中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許可官廳에 申告하여야 하며 營業者의 姓名(法人의 境遇 그 代表者의 姓名), 營業所의 名稱 또는 商號, 營業所의 所在地를 變更하거나 休業, 再開業, 廢業하고자 할 때와 品目の 製造를 중단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營業許可 등의 制限(法第24條)

다음에 該當하는 때에는 法第22條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지 아니한다.

- (1) 該當營業의 施設基準에 不適合한 때. 다만, 法第23條의 規程에 의한 條件 附營業許可는 除外
- (2) 法第58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許可가 取消된 後 6個月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營業場所에서 같은 種類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
- (3) 法第58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許可가 取消된 後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法人의 경우 그 代表者 包含)가 取消된 營業과 같은 種類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
- (4) 共益上 그 許可를 制限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어 保健社會部長官이 定하는 營業 또는 品目에 該當되는 때 (現行 別途 營業許可制限基準 告示 運營)
- (5) 營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가 禁治產者이거나 破産의 宣告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者인 때
- (6) 營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가 이 法에 違反하여 징역형의 宣告를 받고 그 형의 執行이 終了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되지 아니한 者인 때
- (7) 法第5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目製造의 許可가 取消된 後 또는 品目製造가 금지된 後 6個月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品目の 製造를 하고자 하는 때

다. 營業의 承繼(法第25條)

- (1) 法第2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를 받은 者 또는 同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申告를 한 者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併이 있는 때에는 그 讓受人, 相續人 또는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併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 (2) 民事訴訟法에 의한 강제경매, 경매법에 의한 경매, 破産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와 준하는 節次에 따라 營業施設의 전부를 인수한 者는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이 境遇 중전의 營業者에 대한 營業許可 또는 그가 한 申告는 그 效力을 잃는다.
- (3)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1月 以內에 規則3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官廳 또는 申告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 (4) 法第24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許可 등의 制限은 承繼에 이를 준용한다.

라. 品質管理 및 報告(法第29條)

食品 및 添加物의 製造나 加工을 하는 營業者는 原料管理, 製造공정 其他 品質管理上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遵守하여야 하며 食品 및 添加物의 生産實績 등을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마. 營業者의 遵守事項(法第31條)

食品接客營業者는 營業의 衛生的管理 및

秩序維持와 國民保健衛生의 增進을 위하여 規則第42條의 規定이 정하는 事項을 지켜야 한다.

바. 施設利用의 拒否禁止(法第33條)

食品接客營業者는 다음에 該當하는 者를 除外하고는 營業의 施設의 利用을 거부하지 못한다.

- (1) 傳染性疾病에 걸렸다고 認定되는 者
- (2) 도박 또는 風氣를 문란하게 하는 行爲를 하거나 其他 犯法行爲를 하는 者

8. 健康診斷 및 衛生教育 (法第26條 및 法第27條)

食品 등을 取扱하는 營業에 從事하는 者는 健康診斷 및 衛生教育을 받아야 한다.

가. 健康診斷

食品營業所에서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한 者나 健康診斷 結果 他人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疾病이 있다고 認定된 者를 그 營業에 從事하지 못함을 規定하고 있으며 健康診斷은 衛生分野 從事者 等の 健康診斷規則이 定하는 바에 의함.

나. 衛生教育 및 實施機關

- (1) 營業者 衛生教育은 該當營業의 許可官廳 또는 申告官廳이 實施
- (2) 食品接客, 調理販賣業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長官이 實施. 다만, 도서·벽지에서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중에서 許可 또는 申告官廳의 長이 教育을 받다가 困難하다고 認定한 者 또는 教育을 받을 경우 生計維持가 困難하다고 認定하는 者는 除外

(3) 食品衛生管理인에 대한 衛生教育은 該當營業의 許可官廳이 實施

(4) 食品衛生管理인이 되고자 하는 者에 대한 事前 衛生教育은 保健社會部長官이 實施

(5) 從業員에 대한 衛生教育은 第1)내지 第4)의 規定에 의한 衛生教育을 받은 營業者 또는 食品衛生管理인이 實施하되 每月 1回 1時間 以上

(6) 위 規定에 不拘하고 부득이한 事由로 미리 衛生教育을 받을 수 없는 境遇에는 營業開始後 또는 食品衛生管理인이 된 後 2個月以內에 衛生教育을 받아야 한다.

9. 食品衛生管理인(法第28條)

가. 食品衛生管理인의 配置 및 義務

乳製品, 化學的 合成品인 添加物, 其他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食品 및 添加物을 製造 또는 加工하는 營業者는 그 製品 또는 加工을 衛生的으로 管理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有資格 食品衛生管理인을 두도록 하는 規定인 것이다. 食品衛生管理인은 다음과 같은 義務를 성실히 遂行해야 한다.

첫째 : 食品衛生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違反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둘째 : 營業에 從事하는 從業員을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셋째 : 製品 및 施設의 衛生管理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衛生管理”라 함은 食品衛生에 관한 理化學的檢査 및 傳門的知識을 가지고 食品 등의 品質管理의 責任을 지는 것으로 勤勞基準法에서 말하는 衛生管理와는 차이가 크다.

나. 食品衛生管理人的 資格(令第16條)

食品衛生管理人是 1種과 2種으로 區分한다.

(1) 1種 食品衛生管理人的 資格

- 1) 衛生士, 衛生試驗士 또는 食品製造加工技士
- 2) 專門大學 또는 大學에서 醫學·藥學·獸醫學·畜産加工學·水産製造學·農産製造學·農化學·食品加工學·食品化學·食品製造學·食品工學·食品營養學·衛生分野의 學科를 履修하여 卒業한 者 또는 이와 同等以上の 資格이 있는 者
- 3) 外國에서 衛生士·衛生試驗士 또는 食品製造加工技士의 免許를 받은 者나 第1項 또는 第2項과 同等한 過程을 卒業한 者로서 保健社會部長官이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者 또는 外國에서 이와 同等한 資格을 얻었거나 同等한 過程을 履修한 後 保健社會部長官에게 認定받은 者이어야 한다.

(2) 2種 食品衛生管理人的 資格

- 1) 高等學校 또는 高等技術學校(高等技術學校 專功科를 包含한다.)以上の 學校에서 化學工業·食品工業·水産加工·食品冷凍 또는 통조림分野의 學科를 履修하고 卒業한 者이어야 한다.
- (3) 食品衛生管理인을 두어야 할 業種(令第15條)
 - 1) 1種 食品衛生管理인을 두어야 할 業種
 - 常時 20人以上の 勤勞者를 使用하는 營業者
 - 통·병조림을 製造하는 營業者, 化學的合成品인 添加物을 製造하는 營業者, 乳加工品製造業·食

肉製造業 또는 人參製品製造·加工業을 하는 營業者

- 業種間을 合한 勤勞者의 數가 50人에 未達하는 때에는 共同으로 1人의 1種 食品衛生管理인을 들 수 있다.

2) 2種 食品衛生管理인을 두어야 할 業種

- 常時 20人未滿의 勤勞者를 使用하는 營業者
- 業種間의 종업원을 合한 수가 10인 미만인 때에는 1인의 2種食品衛生管理인을 들 수 있다.

(4) 食品衛生管理人的 申告

法第28條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食品衛生管理인을 선임한 때 또는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營業의 許可官廳에 소정신청서(規則第39條)를 作成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10. 調理士 및 營養士(第8章)

調理士라 함은 食品을 調理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者이며 營養士라 함은 營養의 指導等(規則 第44條)을 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가. 調理士(法第34條)

食品接客業者와 集團給食所의 運營者는 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食品接客營業者 또는 集團給食所의 運營者 自身이 調理士가 되어 直接 飲食物을 調理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調理士를 두어야 할 營業等(規則第18條)

- (가) 大衆飲食店 다만, 韓食을 調理하여 販賣하는 境遇로서 당반(복어를 材料로 하여 調理하는 飲食物을 除外

한다.)과 분식만을 販賣하는 飲食店, 인삼차집 및 自動車를 利用한 移動飲食店은 除外한다.

(나) 遊興飲食店 다만, 일반유흥음식점 중 客席의 面積이 33제곱미터未滿인 간이주점과 飲食物을 調理하지 아니하는 유흥음식점은 除外한다.

나. 營養士(法第35條)

常時 1回 50人 以上에게 食事を 提供하는 集團給食에는 營養士를 두어야 하며 常時 1回 給食人員 300人 未滿의 中小企業의 集團給食所에는 給食人員 600人 未滿의 範圍內에서 同一 市·郡·區 또는 同一 工業團地內의 集團給食所에서는 共同으로 1人의 營養士를 둘 수 있다.

다. 調理士의 免許(法第36條)

調理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該當 技術分野의 資格을 얻은 後 市·道知事の 免許를 받아야 한다.

라. 營養士의 免許(法第37條)

營養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각호1에 該當하는 者로서 營養士資格試驗에 合格한 後 保健社會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 (1) 教育法에 의한 大學 또는 專門大學에서 食品學 또는 營養學을 전공한 者
- (2) 外國에서 營養士免許를 받은 者
- (3) 外國의 營養士 養成學校중 保健社會部長官이 認定하는 學校를 卒業한 者

마. 缺格事由(法第38條)

다음에 該當하는 者는 調理士 또는 營養士가 될 수 없다.

- (1) 精神疾患者 또는 心身薄弱者
- (2) 傳染病患者

(3) 마약 其他 약물 중독자

바. 名稱使用의 禁止(法第39條)

調理士 또는 營養士가 아니면 調理士 또는 營養士라는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사. 補修教育(法第40條)

調理士 및 營養士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有關단체 또는 教育機關에서 補修教育을 每年 10時間받아야 한다.

11. 食品衛生審議會(第9章)와 食品衛生團體(第10章)

가. 食品衛生審議委員會(第42條)

1. 食品衛生審議委員構成

保健社會部長官의 자문에 의하여 다음 事項을 調査審議하기 爲하여 保健社會部에 食品衛生審議委員會를 둔다.

- (1) 食中毒防止에 關한 事項
- (2) 食品·添加物公典 作成에 關한 事項
- (3) 食品, 添加物, 器具 및 容器·包裝의 基準과 規格에 關한 事項
- (4) 國民營養의 調査·指導 및 教育에 關한 事項
- (5) 其他 食品衛生에 關한 重要事項

2. 委員會의 組職과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令 第20條 내지 第27條에 規定되어 있음.

나. 食品衛生團體

1. 同業者組合

民法 第32條 및 特殊法人을 除外한 食品衛生法에 의하여 食品營業의 許可를 받은 者가 그 營業의 健全한 發展을 도모하고 國民保健向上에 寄與하기 위하여 業種別로 同業者 組合을 設立할 수 있다.

(1) 設立(法第44條)

(가) 組合을 設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業種別로 組合員의 資格이 있는 者 20人 以上の 발기인이 定款을 作成하여 該當 組合의 組合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 3分の 2 以上の 同意를 얻어 保健社會部長官의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

(나) 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部組織을 둘 수 있다.

(2) 組合의 事業等(法第45條 내지 第48條)

2. 食品工業協會(法第52條)

(1) 食品工業의 發展과 食品衛生의 向上으로 국민보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식품공업협회를 둔다.

(2)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3) 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는 者는 營業者중 食品 또는 添加物을 製造·加工하는 者로 하되 大統領令이 定하는 規模以上の 營業者는 당연히 그 會員이 된다.

이 경우 당연회원이 되는 營業者는 加入年度前 3年間의 年平均 賣出額이 10億 以上인 食品製造·加工業 또는 添加物製造業의 營業者로 한다. 다만, 食品製造·加工業 또는 添加物製造業의 營業者중 中小企業協同組合法·農業協同組合法 畜産業協同組合法 및 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및 그 會員인 營業者와 協會의 會員 및 法人의 會員인 營業者는 除外한다.

(4) 協會의 事業(法第53條)

(가) 食品工業에 관한 調查研究

(나) 食品·添加物 및 그 原資材의 試驗·檢査業務

(다) 食品衛生管理인의 教育

(라) 營業者중 食品 또는 添加物을 製

造·加工하는 者의 營業施設의 改善에 관한 指導

(마) 그외의 事業의 부대사업

3. 韓國食品衛生研究院(法第54條의 2)

(1) 食品衛生과 관련된 傳門的인 調查·研究事業등을 遂行함으로써 衛生施策의 지원과 위생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韓國食品衛生研究院을 설립한다.

(2) 研究院은 法人으로 한다.

(3) 研究院의 任員, 任員의 改善, 業務, 會計등에 관한 사항은 法第46條 및 第47條의 同業者 組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이 법에 정한 것 이외에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遵用한다.

12. 是正命令·許可取消等 行政制裁(第11章)

가. 是正命令(法第55條)

(1) 保健社會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法第3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 등의 衛生的 取扱에 관한 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營業을 하는 者와 其他 이 法을 지키지 않는 者에 대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是正을 命할 수 있다.

(2) 保健社會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是正命令을 한 境遇에는 그 營業을 管轄하는 관서의 長에게 그 內容을 通報하여 그 是正命令이 履行될 수 있도록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나. 廢棄處分等(法第56條)

다음에 該當하는 規定에 違反하는 食品 등에 대하여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押留 또는 廢棄하게 하거나 營業을 하는 者

에 대하여 食品衛生上의 위해를 除去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 (1) 販賣 等 禁止(法 第4條), 병육 등의 販賣 等 禁止(法第5條), 基準, 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化學的合成品 等の 販賣 等 禁止(法第6條), 基準과 規格(法第7條 第4項), 有害器具 等の 販賣 等 禁止(法第8條), 基準과 規格(法第9條 第4項), 表示基準(法第10條 第2項), 虛僞表示 等の 禁止(法第11條), 不合格品 等の 販賣 等 禁止(法第15條)

다. 施設의 改修命令 等(法第57條)

- (1) 許可官廳은 營業者에 대하여 그 營業 施設이 法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 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期間을 定하여 施設의 改修를 命할 수 있으며,
- (2) 建築物의 所有者와 營業者 등의 다른 境遇 建築物의 所有者는 第(1)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따른 施設의 改修에 최대한 協助하여야 한다.
- (3) 食品接客營業所에 있어서 建築物의 所有者와 食品接客營業所가 다른 경우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施設의 改修를 命하는 外에 부득이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該當建築物의 所有者에게 衛生施設의 改修를 命할 수 있다. 이 境遇 부득이한 事由란 該當 建築物內에서 共同으로 使用하도록 設置된 上·下水道施設 및 化粧室, 其他 該當 建築物內에서 共同으로 使用하는 施設을 말한다.

라. 營業許可의 取消 等(法第58條)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營業者가 다음에 該當하는 때에는 營業許可의

全部 또는 일부를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營業을 停止하거나 營業所의 閉鎖(申告營業)를 命할 수 있다.

(1) 許可取消 等の 要件

- (가) 販賣 等 禁止(法第4條), 병육 등의 販賣 等 禁止(法第5條), 化學的合成品 等の 販賣 等 禁止(法第6條), 基準과 規格違反(法第7條 4項 및 法第9條 4項), 有毒器具 等の 販賣 等 禁止(法第8條), 表示基準(法第10條 第2項), 虛僞表示 等の 禁止(法第11條), 不合格 等の 販賣 等 禁止(法第15條), 自家品質檢査의 義務(法第19條 第1項), 營業의 許可 等(法第22條 第1項 후단, 第2項, 第4項 및 第5項 후단), 健康診斷(法第26條 第3項), 衛生教育(法第27條 第3項), 食品衛生管理人(法第28條 第1項, 第3項 및 第4項), 品質管理 및 報告(法第29條), 營業者의 遵守 事項(法第31條), 調理士(法第34條)
- (나) 法第22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條件에 違反한 때
- (다) 營業許可 等の 制限(法第24條 第1項 第1號·第5號 또는 第6號의 1에 該當된 때
- (라) 法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제한에 違反
- (마) 是正命令(法第55條 第1項), 廢棄處分 等(法第56條 第1項 및 第3項) 施設의 改修命令에 違反한 때(法第57條 第1項)
- (바) 其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 (2)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營業者가 營業의 停止命令에 違反하여 繼續 營業行爲를 하는 때에는 그 營業의 許可를 取消하거나 營業所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 (3)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正當한 事由없이 繼續하여 6月以上 休業하는 때에는 그 營業의 許可를 取消하거나 營業所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 (4) 行政處分の 細部的인 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類型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마. 品目製造許可의 取消 등(法第59條)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다음에 該當하는 때에는 品目製造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以上 期間을 定하여 品目の 製造停止를 命할 수 있으며 品目製造 申告를 한 品目の 경우에는 製造禁止 또는 6月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製造停止를 命할 수 있고 그 品目許可를 取消하거나 品目製造 禁止를 命할 수 있다.

- (1) 基準과 規格(法第7條 第4項 및 法第9條 第4項), 表示基準(法第10條 第2項), 虛僞表示 등 禁止(法第11條 第1項), 不合格品 등 販賣 등 禁止(法第15條), 自家品質檢査義務(法第19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
- (2) 其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바. 營業許可 등의 取消要請(法第60條)

保健社會部長官은 畜產物衛生處理法, 水產業法 또는 酒稅法에 의하여 許可 또는 免許를 받은 者가 法第4條 내지 法第6條 또는 第7條 第4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該當許可 또는 免許를 管轄하는 中央行政機關議長에게 그 許可 또는 免許의 全部 또는 一部를 取消하거나 期間을 定하여 營業을 停止시키거나 其他 衛生上 必要한 措置를 한 것을 要請할 수 있다. 다만, 酒類의 境遇에는 保健犯罪團에 관한 特別措置

法이 定한 유해기준에 該當하는 境遇에 한한다.

사. 行政制裁處分效果의 承繼(法第61條)

營業者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法人의 合併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營業者에 대하여 法第58條 第1項 各號·同條 第2項 또는 法第59條 第1項 各號의 違反을 事由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效果는 그 期間이 滿了된 날로부터 1년간 讓受人 또는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節次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讓受人 또는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이 讓受 또는 合併時에 그 處分 또는 違反事實을 알지 못하였음을 證明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閉鎖措置(法第62條)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하는 때 또는 法第58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되거나 營業所의 閉鎖命令을 받은 後에 繼續하여 營業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該當營業所를 閉鎖하기 위하여 다음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 (1) 當該 營業所의 着版 其他 營業標識物 除去, 削除
- (2) 當該 營業所가 適切한 營業所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3) 當該 營業所의 施設物 其他 營業에 使用하는 器具 등에 使用할 수 없게 하는 封印

자. 免許取消(法第63條 : 생략)

차. 聽聞(法第64條)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法第

58條·法第59條 또는 法第63條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미리 當該處分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에게 意見を 진술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當該處分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이 正當한 事由없이 이에 應하지 아니하거나 處分의 相對方의 所在不明 등으로 의견진술의 機會를 줄 수 없는 경우와 國民保健衛生上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행하여지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문의 節次는 다음과 같다.

- (1) 營業者 또는 그 代理人에게 出席要求
- (2) 청문서를 첨부하여 營業者 또는 代理人에게 發送(市·道 7日前, 保健社會部 10日前)
- (3) 소명재료를 記載하여 當該機關에 提出, 다만, 청문서를 提出하지 않을시 청문의 利益 拔棄看做
- (4) 청문을 應한 者에게 關係公務員은 答辯書를 作成하여 出席者로 하여금 確認하고 署名捺印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課徵金處分(法第65條)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營業者가 法第58條第1項 各號 또는 第59條第1項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營業停止處分 또는 品目製造停止處分에 갈음하여 5천만원 以下の 과정금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法第6條(基準·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化學的 合成品 등의 販賣 등 禁止)의 規定을 違反한 境遇는 除外한다.

- (1) 課徵金を 期限內에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 (2) 課徵金으로 徵收한 金額은 食品振興基金에 歸屬한다.

13. 補則(第12章)

가. 國庫補助(法第66條)

保健社會部長官은 豫算의 範圍안에서 다음 經費를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 (1) 收去에 所要되는 經費
- (2) 食品衛生檢査機關에서의 檢査와 實驗에 所要되는 經費
- (3) 組合 및 研究院의 教育訓練에 所要되는 經費
- (4) 食品衛生監視員의 運營에 所要되는 經費
- (5) 調査·研究事業에 所要되는 經費
- (6) 組合의 自律指導員의 運營에 所要되는 經費
- (7) 廢棄에 所要되는 經費
- (8) 사체의 해부에 所要되는 經費

나. 食中毒에 관한 調査報告(法第67條 : 생략)

다. 사체해부(法第68條 : 생략)

라. 集團給食所에서의 準用規則(法第69條 : 생략)

마. 國民營養調査 및 指導(法第70條)

- (1) 保健社會部長官은 國民營養을 改善하기 위하여 國民營養調査를 實施한다.
- (2) 國民營養調査員(서울특별시·직할시 및 道)을 둔다.
- (3) 營養指導員을 두어 給食·營養에 관한 知識의 向上 및 食品의 調理方法, 改善 등에 必要한 支援 및 指導業務를 行하게 한다.

바. 食品振興基金(法第71條)

食品衛生 및 國民營養의 水準 向上을 위한 事業을 遂行하는데 必要한 재원에 充當하기 위하여 食品振興基金을 設置한다.

(1) 基金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가) 食品衛生團體의 出捐金
- (나) 法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과징금
- (다)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수익금
- (라) 其他 收入金

(2) 基金은 다음의 事業에 使用한다.

(가) 營業者의 營業施設改善을 위한 融資事業

(나) 食品衛生에 관한 教育·弘報事業

(다) 食品衛生 및 國民營養에 관한 調查·研究事業

(라) 保健社會部長官이 食品衛生에 관하여 組合·研究院 및 協會에 委託하는 事業

(마) 食品衛生教育·研究機關의 육성 및 지원

(바) 其他 食品衛生 및 國民營養에 關한 事業 등

14. 罰則(第13章)

가. 罰則(法第74條 내지 第77條)

條 文	違 反 事 項	違反에 대한 適用法條文	罰 則
第 4 條	販賣 等 禁止(集團給食所準用) 병육등의 販賣등 禁止(集團給食所準用)	第 74 條	5年이하懲役 또 1천500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第 6 條	基準·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化學的合成品 등의 販賣등 禁止(集團給食所準用)	"	"
第 8 條	有毒器具 등의 販賣·使用禁止(集團給食所準用)	"	"
第15條	不合格品 등의 販賣등 禁止(集團給食所準用)	"	"
第22條 第1項	無許可營業	第 74 條	5年이하懲役 또 1천500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第 7 條 第4項	食品 등의 基準과 規格(集團給食所 準用)	第 75 條	3年이하懲役 또 1천만원 이하의 罰

條 文	違 反 事 項	違反에대한 適用法條文	罰 則
			金에 處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음
第 9 條 第 4 項 第16條 第 1 項 第30條 第56條 第 1 項 및 第 3 項 第58條	器具 및 容器·包裝의 基準과 規格 (集團給食所準用) 輸入食品 등의 申告 營業의 制限 廢棄處分 등에 대한 命令에 違反	" " " " " "	" " " "
第28條 第 1 項 및 第 3 項	營業停止命令에 違反하여 繼續한 者 (營業許可를 받은 者에 한함) 食品衛生管理人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와 食品衛生管理人을 둔 者가 食品衛生管理人의 業務를 妨害한 때	第 76 條	2年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以下の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第34條 第35條 第10條 第 2 項	調理士를 두지 아니한 때 營養士를 두지 아니한 때 表示基準違反(集團給食所準用)	" " 第 77 條	" " 1年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以下 의 罰金에 處한다.
第11條 第 1 項 第19條 第 1 項 第22條 第 3 項 나지 第 5 項 第25條 第 3 項 第39條 第16條 第 2 項 第17條 第 1 項	虛偽表示 등의 禁止 自家品質檢査의 義務 無許可品目製造, 休業, 再開業 또는 廢業申告 등 變更申告, 無申告 또는 申告事項 變更등 營業者地位承繼申告 調理士 또는 營養士 名稱使用禁止 檢査·臨檢·收去 또는 押留를 거부 하거나 忌避한 者 檢査·臨檢·收去 또는 押留를 거부 하거나 忌避한 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條 文	違 反 事 項	違反에대한 適用法條文	罰 則
第56條 第 1 項 및 第2項 (第49條 準用)	"	"	"
第21條	施設基準(集團給食所準用)	"	"
第22條	條件에 違反한 營業者	"	"
第 2 項			
第28條	義務를 怠慢히 하여 이 法에 違反하는	第 77 條	1年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第 2 項	食品衛生管理人		
製29條	營業者가 지켜야 할 事項을 지키지	"	"
第 1 項	아니한 자		
또는			
第31條			
第58條	營業停止命令에 違反하여 繼續營業을	"	"
第 1 項	한 者(申告業에 該當) 또는 營業所의 閉鎖命令에 違反한 者		
第59條	製造停止命令에 違反한 者	"	"
第 1 項			
第62條	관계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	"	"
第 1 項	등을 무단히 제거 또는 損傷한 者		
第 2 號			

나. 過怠料(法第78條)

(1) 다음에 該當하는 者에 대하여는 100만원 以下の 과태료에 처한다.

- (가) 健康診斷(法第26條第1項 및 第3項, 集團給食所準用), 衛生教育(法第27條第1項 및 第3項, 集團給食所準用) 또는 食中毒申告(法第67條第1項)
- (나) 食品衛生管理人 解任·選任(法第28條第4項)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申告를 한 者

- (다) 品質管理 및 報告(法第29條第2項)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申告를 한 者
- (라) 施設의 改修命令(法第57條第1項 또는 第3項, 集團給食所準用)에 違反한 者
- (마) 集團給食所(法第69條第1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로 申告한 者

- (2) 過怠料는 規則 第56條 規定에 의하여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賦課 徵收한다.
- (3)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以內에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에 의한 過怠料의 재판을 한다.
- (5) 期間內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다. 양벌규정(法第79條)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其他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法第74條 내지 法第77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外에 그 法人이나 個人에 대하여도 該當 各號의 罰金刑을 과한다.

라. 過怠料에 관한 規定適用의 特例(法第80條)

過怠料에 관한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法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과징금을 賦課한 行爲에 대하여는 過怠料를 부과할 수 없다.

{ 본고는 1992年度 「食品衛生管理人 教育教材」(韓國食品工業協會) 내용중 일부 입니다 }

